

外國의 關稅制度(3)

■ 오늘날 國際社會는 自國의 經濟的利益을 최대한 確保 코자하는 世界各國의 보이지 않는 戰爭이 보다 치열 해져가고 있고, 特히 貿易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各國의 競爭과 摩擦은 貿易障壁에 대한 關心을 급증시키고 있다.

關稅는 各國의 產業保護와 財政收入 寄與를 위하여 活用되어온 政策手段이라 할 수 있고, 國家間 貿易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障壁으로서의 重要한 役割을遂行하고 있다.

本稿는 財務部 關稅局에서 發刊한 資料('92政策資料/關稅)로서 우리의 관심대상국가들을 중심으로 各國의 關稅率 體系 및 관세 관련 制度에 관하여 整理한 것이다. ■

V. 濟洲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가. 貿易概況

- 貿易規模('91基準) : 輸出 世界 22位, 輸入 世界 21位(EC를 1個國으로 간주 시 각각 15位)

- 輸出 : 418億弗 → 世界 總 輸出의 1.2%

- 輸入 : 412億弗 → 世界 總 輸入의 1.1%

- 貿易構造

- 輸出 : 1次產品 輸出이 全體의 $\frac{3}{4}$ 차지
· 食品 · 原料 · 農產物의 輸出이 全體 輸出의 약 40%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그比重은 減少趨勢

- 燃料·礦產物·非鐵金屬의 輸出比重은 增加趨勢
 - '80年代 以後 1次產品 價格下落으로 輸出構造의 多樣化 必要性을 認識하고 이를 위한 構造調整政策 推進
 - 輸入 : 工產品이 대중을 이루고 있음.
 - 機械類·化學製品의 輸入이 全體輸入의 약 40%를 차지하며 그比重 또한 增加趨勢
 - 石油 및 同 製品의 輸入比重은 '80年代를 통하여 10% 水準에서 5% 水準으로 減少
- 貿易 相對國 : 日本, EC, 美國이 3大交易相對國임
- 輸出
 - 國別 輸出比重에 있어 日本 26%, EC 13%, 美國 11%의 順임
 - 日本과 EC에의 商品輸出의 약 90%, 美國에의 商品輸出의 약 80%가 1次產品임
 - 其他 주요 輸出市場 : 韓國, 臺灣, Hong Kong, 싱가폴, 中國등
 - 中國에의 主要 輸出品은 食品과 原資材이며 韓國·臺灣에는 石炭·羊毛·알루미늄합금, 싱가폴·Hong Kong에는 金 輸出이 주종을 이룸
 - 輸入
 - 國別 輸入比重에 있어 美國 24%, EC 23% 및 日本 19%의 順임
 - 이들 3個國으로부터의 主要 輸入品은 機械, 自動車 및 同 部分品이며 1次產品 輸入比重은 10% 이하임
 -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있어서는 '80年代 이후 中東地域으로부터의 輸入比重이 크게 減少한 반면 여타 아시아地域으로부터의 輸入比重은 增加勢를 나타냄

〈表 1〉 輸出入 構造 推移

〈表 2〉 主要 交易相對國別 輸出入 比重〉

- '88. 1月 HS 品目分類方式 導入
 - 品目轉換에 따른 關稅率 調整으로 單純平均 關稅率 0.7% 引上效果 發生
- '88. 5月 關稅引下 豫示制 實施
 - 15%이상 品目→15%씩
 - 10~15% 品目→10%씩

⇒ 1992. 7. 1까지 每年 引下計劃

 - 단, 이전의 政府 결정하에서 段階的으로 稅率이 引下된 品目은 등 예시체에서 除外
 - 中間財의 輸入에 賦課되는 2%의 수의세(revenue duty)를 1988. 7. 1부터 廢止
 - 同豫示制에 의해 高關稅 賦課에 의한 農產部門保護가 어렵게 됨
- 主要 高關稅 分野
 - 纖維, 旅行用品, 輸送裝備, 非電氣式機械類, 신발등
- 輸入品의 70%가 MFN 關稅適用 對象
 - 主要對象國 : EC, 美國, 日本등
- 無稅適用
 - 濟洲와 뉴질랜드간 經濟貿易協定에 의해 1990. 7. 1부터 뉴질랜드로부터의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無稅適用(完全自由貿易化)
 - 無稅輸入中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比重 : 60%('86~'89年)

2. 關稅率 體系

1. 關稅率 水準

- 關稅引下 예시제에 의해 關稅率은 '92年까지 段階的으로 引下됨
 - 平均關稅率 : 10.6%('89)→5.6%('92)

- 輸入額 加重平均稅率은 單純平均稅率보다 낮음
- GATT評價에 따르면 加重平均이 單純平均보다 약 20% 낮은 것으로 推定
- 이는 關稅의 貿易制限效果로 인하여 高關稅品目일수록 輸入額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反映함.

〈表 3〉 主要 分野別 平均關稅率 및 關稅率 範圍

3. 關稅讓許

- 여타 先進國에 비하여 讓許比重이 낮음
- 現在 品目數 基準 19%, 輸入額 基準으로 37%相當 品目 讓許
- 특히 工產品의 讓許比重이 農產物에 비하여 낮음
 - 品目數 基準으로 農產物 37%, 工產品 16% 讓許
- UR協商에서는 全 品目으로 讓許範圍를 擴大하는 Offer를 提出한 바 있음

〈表 4〉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

4. 加工度別 稅率隔差 (Tariff Escalation)

- 加工度別 稅率隔差는 農產物보다 工產品이 더 큼
- 工產品의 경우 누진적 稅率隔差가 현저하나 農產物의 경우 加重平均稅率에 있어 半加工品이 基礎產品보다도 낮은 것이 特徵

- 加工度別 稅率隔差는 關稅引下 예시에 의해 줄어들 展望

〈表 5〉 加工度別 稅率構造

5. 特惠關稅

- 濟洲의 關稅特惠는 ASTP 制度와 쌍무 및 地域貿易協定에 의해 運營
- ASTP(Australian System of Tariff Preferences)
 -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하여 5% Point의 關稅引下 特惠 賦與
 - 쌍무협정 및 地域貿易協定에 의한 關稅特惠
 - 對象國: 뉴질랜드, 南太平洋群島國家(Forum Islands Countries), 파푸아뉴기니, 카나다
 - 同 對象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대한 平均關稅率은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品에 대한 것보다 낮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無稅適用
- 開途國에 대하여 關稅上 特惠를 賦與하고 있기는 하나 實際 輸入構造에 비추어 볼 때에는 開途國이 先進國보다 높은 關稅率을 適用받고 있음
- 이는 開途國의 主要 輸出品目(纖維·衣類·신발등)이 濟洲의 高關稅分野이기 때문임
- 纖維·衣類·신발 제외시는 開途國에 適用되는 平均稅率이 先進國에 適用되는 平均稅率보다 낮음

〈表 6〉 各國으로부터의 輸入에 適用되는 關稅率 平均

- 其他 政策의인 關稅特惠 賦與

- 國內에서 生產되지 않는 輸入商品에 대하여 무세 적용
- 政策的 支援 必要 品目을 法의 规定 을 통해 支援(무세, 低稅率)
- 國產部品 使用比率등 特定條件을 만족시키는 輸入品에 低稅率 適用

6.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

가. 덤핑防止 및 補助金 相計關稅

- 濟洲는 덤핑防止協約 및 補助金 · 상계 관세協約 가맹국임
- '88. 9부터 덤핑防止關稅와 상계관세를 다루는 專擔機構를 設立하여 調査 및 관세부과권과 권능 부여
 - 豫備調査는 關稅廳이 수행
 - 同 制度下에서 덤핑 또는 補助金 關聯 제소는 實質적 피해 또는 被害우려를 주장하는 國內產業 또는 간접적 影響을 받는 당사자에 의해서 可能
 - 調査後 輸入品에 대한 關稅賦課措置는 최장 3년이내에 自動적으로 滿了 됨
- 덤핑防止 提訴件數 및 關稅賦課 · 價格約束件數는 '80年代 初에 가장 많았으나 '80年代 중반 이후 減少趨勢
 - 調査開始件數 : 100件('82~'83)
→ 21件('88~'89)
- 상계관세는 덤핑防止關稅에 비하여 빈도가 낮음
 - 調査開始件數 : 9件('82~'83) → 2件 ('88~'89)으로 減少 趨勢
 - 最종적으로 相計關稅가 賦課된 事例는 '82以後 1件에 不過(주로 價格約束으로 종결됨)

〈表 7〉 덤핑防止 및 相計關稅措置

나. 緊急輸入制限措置(GATT 第19條 Safeguard)

- GATT 19條를 利用한 緊急輸入制限措置 使用에 상당한 變化가 있었음
 - '60~'70年代에 가장 빈번
 - '60年代 : 15件(전체의 2/5)
 - '70年代 : 17件(전체의 1/3)
 - '80年 以後 4件으로 減少
 - '83년 이후 措置를 취한 事例가 없음
- 대부분 措置는 4年以內에 종결됨
 - 特別한 保護가 必要한 경우 보다 長期에 걸쳐 시행된 경우도 있음(例 : 衣類 · 自動車)
 - 현재 시행중인 措置는 없음

〈表 8〉 緊急輸入制限措置 施行期間別 措置件數

다. 割當關稅(Tariff quota)

- 割當關稅에 의한 保護品目을 크게 TCF品目(纖維 · 衣類 · 신발)과 치즈 · 커드(Curd)로 구분
 - 뉴질랜드와 南太平洋 群島國家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는 割當關稅 適用 배제
- TCF品目에 대한 割當關稅
 - '88年 以後 TCF品目에 대한 割當關稅 計劃이 '89. 3月부터 施行되고 있음
 - 同 計劃은 쿼터 초과분에 대한 罰則稅率(Penalty duty)을 引下함으로써 割當關稅를 점진적으로廢止할 計劃임
 - 쿼타의 유형에 있어 基本쿼타와 入

札契타로 나누어 適用

- 양 쿠타는 1年(1. 1~12.31)을 單位로 하여 運營
- 基本キュタ: 個人 및 企業의 既存 輸入實績을 基準으로 割當하며 '92. 2廢止됨
- 入札キュタ는 政府入札의 경우에 의해 주어지며 자유로이 讓渡가 可能함
→ '95年까지 品目群別로 每年 擴大되다가 '95. 6月末에 쿠타廢止 豫定
- 兩 쿠타의 廢止로 TCF品目에 대한 割當關稅制度는 '95. 6月로 廢止 豫定
- 치즈·커드에 대한 割當關稅
 - 최초 배분량은 個別申請者の 基準年度 輸入의 13/12임
 - 쿠타와 基準年度 實績은 他 輸入業者에 讓渡可能
 - 치즈·커드에 대한 割當關稅는 '92. 6. 30에 종료

라. 課徵金 · 其他 賦課金

- 酒類· 담배: 國內產品에 消費稅가 賦課되는 바, 輸入商品에도 關稅에 消費稅를 包含하여 賦課
- 石油製品 一部: 國內 消費稅와 같은 稅率水準의 關稅賦課
- 品目에 따라서는 國內產品에 유리한 稅率構造 設定
 - 파일쥬스 販賣稅(Sales tax)의 경우
 - 輸入品 → 20% 販賣稅 賦課
 - 濟洲·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產原料比率이 25% 以上인 品目 → 10% 販賣稅 賦課

7. 觀察 및 評價

- 濟洲는 아시아地域에 대한 貿易依存度가 높은 편이며 이러한 現象은 APEC

에서 가장 積極的인 역할을 擔當하려는 자세로 나타나고 있음

- '88年 이후 關稅引下豫示制를 實施하여 段階的으로 稅率이 引下되고 이에 따라 加工度別 稅率隔差(Tariff Escalation)도 縮小됨
- 現在 다른 先進國에 비하여 謂許水準이 낮으며 UR協商에 있어서는 全品目으로 謂許範圍를 擴大하는 offer를 提出하였으며 平均關稅率 水準도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해 '92年 5.6%로 내려가는 등 전반적으로 關稅障壁이 緩和·下向調整되는 趨勢임
- 뉴질랜드와의 經濟貿易協定에 의해 '90. 7月부터 뉴질랜드로부터의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무세가 適用되며 그 외에도 自國에서 生產되지 않는 物品에 대하여 무세를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纖維·衣類·신발등 開途國의 主要 輸出商品에 대하여 高關稅를 賦課하고 있어 實質的으로는 開途國이 오히려 先進國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關稅障壁에 직면케 되는 隘路發生

VI. 뉴질랜드

1. 貿易 및 關稅制度 概要

가. 貿易概況

- 貿易規模('91基準): 先進國中 輸出入規模가 가장 작음
 - 輸出: 96億弗→世界 總 輸出의 0.27%
 - 輸入: 84億弗→世界 總 輸入의 0.23%
- 貿易構造

- 輸出 : 農產物 · 原資材가 輸出主宗
分野→全體 輸出의 $\frac{2}{3}$ 차지
 - 主要品目 : 羊毛, 酪農製品, 肉類
 - 世界 양고기 輸出의 50%, 羊毛輸出의 20% 및 버터輸出의 15% 占有
 - 最近 林產物, 園藝作物, 가죽, 원피의 중요도가 漸增하고 있으며 消費財, 機械類, 事務器機 · 通信裝備等 工產品 輸出比重도 增大趨勢
- 輸入 : 工產品 輸入比重이 높음
 - 主要輸入品目 : 化學製品, 事務器機
 - 通信裝備, 非電氣式機械, 自動車, 半加工品等
 - 自然資源이 풍부하여 1次產品의 輸入比重은 相對的으로 낮음
 - 國際 原油價格下落 및 國內 石油產業發達豆 燃料輸入比重은 지난 10年間 22%水準에서 5%水準으로 下落

〈表 9〉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 貿易 相對國

- '60年代까지는 歷史的 要因의 作用으로 英國과의 交易比重이 매우 높았음
 - 輸出의 80%, 輸入의 50% 占有
- 最近 貿易 對象國이 상당히 多邊化됨
 - EC, 日本, 濟洲, 美國이 主要 交易對象
 - 英國과의 貿易比重, 尤其 輸出比重은 '80年代 以後 현저히 減少
 - 輸出 : 濟洲와의 自由貿易協定後 濟洲가 最大 輸出市場이 되었으며 위 4個國에 대한 輸出이 全體輸出의 약 $\frac{2}{3}$ 를 차지
 - 輸入 : 濟洲, EC로부터의 輸入이 각각 總 輸入의 $\frac{1}{5}$ 을 차지

- 開途國과의 貿易比重은 OECD國家의 平均 對 開途國 貿易比重에 비하여 높은 水準임
 - '80年代 以後 開途國에 대한 輸出增加率이 其他 國家에 대한 輸出增加率을 앞지르고 있음
 - 그러나 같은 期間에 있어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增加率은 全體 輸入增加率에 못미치고 있는 바, 이는 主로 國際 石油價格下落에 따른 石油輸入額 減少에 의한 것임
 - 開途國으로부터의 非石油 輸入은 其他 輸入源으로부터의 輸入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增加하고 있음

〈表 10〉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比重

나. 關稅制度

- '85以後 國內生產이 되지 않는 모든 品目이 無稅化를 目標로 關稅引下 豫示制 推進
 - 86. 7月 및 '87. 7月에 關稅率 25% 이상 品目의 關稅를 一定率씩 引下
 - '88~'92間 年度別로 段階的 關稅引下 實施
 - 現在 '93~'96間 年度別 段階的 關稅引下計劃 推進中
 - 신발, 카페트, 衣類, 自動車를 除外한 모든 品目의 關稅率을 10%까지 引下 豫定
 - '88. 1月 HS 導入 · 施行
 - 品目數에 있어 종전 CCCN하의 2,000 餘個 品目이 7,000個 以上으로 增加
- 關稅收入 : 절대 金額 및 政府財政收入中 占有比가 모두 減少하는 趨勢

〈表 11〉 關稅收入 및 比重

2. 關稅率 體系

- '88以後 關稅引下 5個年計劃 實施
 - 同 計劃에 따라 '92年까지 대부분 品目이 20% 이하의 稅率로 引下됨
 - 國內產業 育成發展을 위하여 施行하는 產業計劃(Industry Plan) 對象 分野는 일반적인 關稅引下對象에서 除外
→ 별도의 計劃에 따라 보다 緩慢한 速度로 關稅引下 豫定

〈表 12〉 年度別 關稅引下 推移

- '92～'96間 關稅引下計劃
 - 대부분 品目의 關稅率을 10%以下로 引下 豫定
 - '92 現在 關稅率이 10%以下인 品目 은 追加引下對象에서 除外

〈表 13〉 MFN 稅率構造別 品目比重

- '92年에는 대부분 品目의 關稅率이 20%이하의 範圍에 이르게 됨
 - 대부분의 投入財에 대하여 無稅를 適用하는 반면, 完製品에 대하여는 高率關稅를 賦課하여 부분적으로는 加工度別 稅率隔差가 커지는 傾向을 보임
 - 平均稅率水準은 持續的으로 引下趨勢

〈表 14〉 平均 關稅率 推移

- 關稅의 類型에 있어서는 '90. 7月 一部品目을 除外한 모든 品目의 從量稅 를 從價稅로 轉換
 - 從量稅 殘存品目 : 酒類, 페타뇰, 플라스틱 단추등

3. 關稅讓許

- 品目數 基準 55%, 輸入額 基準 63%相當品目 讓許
 - 品目數 基準으로는 工產品의 讓許比重이 높지만 輸入額 基準으로는 農產物의 讓許比重이 높음
- UR協商에서는 讓許範圍를大幅擴大하는 offer를 提出
 - 品目數 基準 98%, 輸入額 基準 99%로 讓許範圍 擴大

〈表 15〉 UR協商前後 關稅讓許 比較

- 讓許水準은 각 品目群에 따라 多樣함
 - 酪農製品 : 品目數 基準 16%, 輸入額 基準 3%
 - 電氣式機械 : 品目數 基準 35%, 輸入額 基準 18%
 - 花卉類 · 植物 · 菜蔬類 : 品目數 基準 97%, 輸入額 基準 100%
 - 穀物 · 肉類 : 輸入額 基準 99%

4. 特惠關稅制度

가. 貿易協定

- 濟洲-뉴질랜드 經濟貿易協定(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ANZCERTA)
 - 1990. 7. 1부터 濟洲로부터의 모든 輸入品에 대하여 무세 적용
- 其他 쌍무협정에 의한 關稅上 特惠賦與
 - 對象國 : 加拿다, 말레이지아, 英國, 南太平洋 經濟協力協定(SPARTECA) 회원국인 南太平洋 群島國家 등

나.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146個 開途國에 대하여 關稅特惠 賦與
 - 이중 40個 最빈국에 대하여는 모든 輸入에 대하여 무세 적용
 - 中國, 臺灣, 韓國이 主要 GSP 受惠 國임
- 全體 輸入에서 GSP 受惠 國家로부터 的 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增加 趨勢

	'83～'84	'86～'87
輸入額(百萬NZ\$)	403	→ 1,105
輸入比重(%)	4.9	→ 10.2

- GSP 對象 除外品目
 - 肉類, 魚類, 酪農製品 및 一部農產物, 化學製品, 신발, 가죽, 建築材料, 食器類, 鐵鋼, 自動車, 一部 消費財
- 卒業制度
 - 國別卒業
 - '85. 3부터 採擇
 - GSP 受惠國의 1人當 GNP가 뉴질랜드 1인당 GNP의 70%에 도달 하면 GSP 賦與 철회
 - 品目別 卒業
 - '89. 7부터 採擇
 - 特定 受惠國으로부터의 年間 特定 品目 輸入이 當該品目的 年間 總輸入의 25%를 초과하는 同時に 이에 따르는 關稅額이 100,000NZ\$를 초과하는 경우
 - 2年 연속 品目別 卒業條件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GSP 재부여 可能
 - 一部 品目은 品目別 卒業對象에서 除外됨

다. 其他 關稅特惠

- 政策的 考慮에 따라 다양한 品目들을

選定, 關稅上 特惠 賦與

- 適用稅率: 無稅
- 主要對象分野: 產業用機械, 原材料, 消費財等

5. 關稅上 輸入被害 救濟制度

가. 덤핑防止 및 補助金相計關稅

- '81年에 補助金協約, '88年에 덤핑防止 協約에 각각 加入
 - 덤핑防止協約 加入이 여타국에 비하여 늦음 → 輸入許可制度를 통한 國內產業 保護效果로 인하여 덤핑제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임
 - 輸入許可制度 廢止計劃樹立以後 덤핑問題에 관심을 가지게 됨
- '88年 덤핑防止 · 相計關稅法 制定
 - 90日內에 예비결정 및豫備決定後 90日內에 최종결정
 - 關稅賦課 시한(Sunset Clause)은 規定되어 있지 않으나 賦課後 2년내에 덤핑防止 · 相計關稅의 계속 賦課與否를 評價토록 規定
- 1982～'90年 사이에 취하여진 덤핑 調查件數는 21件으로 이중 10件에 덤핑防止關稅 賦課
 - 大부분 農產物(5件), 금속류(4件), 化學製品(2件)과 관련된 제소였음
 - 國別로는 21個 調查件數中 10件이 濟洲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것임
- 상계조치에 있어서는 1980年代에 4件의 調查가 개시되었는바, 이중 濟洲와 關聯된 것이 3件임.

〈表 16〉 '80年代 뉴질랜드의 相計關稅措置

- 濟洲 - 뉴질랜드 經濟貿易協定에 의해 1990. 9부터 양국사이에 덤핑防止關稅

는 廢止되었으나 상계관세는 계속 賦課可能

나.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 GATT 19條에 依據, 輸入品의 급증에 의해 야기된 國內產業의 실질적被害가 있을 경우 措置可能
 - 可能한 措置로는 關稅賦課, 수입할당, 生產補助金등이 있으며 12개월간 適用可能
- GATT 19條下에서 취하여진 緊急輸入制限措置는 '75年 단 한차례였음
 - '89年에는 신발輸入에 대한 緊急輸入制限措置要求를 기각한 바 있음

6. 其他

가. 關稅評價

- 뉴질랜드는 GATT / 關稅評價協約의 加入國임
- 課稅價格은 f.o.b. 價格을 사용
 - 海外運送費用, 保險料는 과세가격에서 除外
 - 단, 內陸運送 및 內陸保險料는 이에 포함

나. 原產地 規定

- 原產地 規定에 관한 일반적인 體系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원산지 規定이 요구되는 主要品目은 신발, 의류, 건전지 등임
 - 特惠關稅(특히 GSP)의 경우 원산지 요건이 요구됨

· 附加價值基準 採擇 : 당해 受惠國에서 附加된 가치가 同 製品總價額의 50%이상이 되어야 GSP受惠資格 賦與

· 自國產(뉴질랜드) 공여분도 GSP受惠國을 原產地로 認定

7. 觀察 및 評價

- 뉴질랜드는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하여 關稅率을 引下하고 있으며 UR協商以前에는 讓許水準이 낮았으나 UR協商에서 讓許範圍를 대폭 擴大하는 offer를 제출하였음
- 濟洲와 自由貿易協定을 체결, 동국으로부터의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를 철폐함으로써 經濟協力 增大를 도모하고 있음
- 濟洲와 北아시아地域으로의 輸出이 急增하는 추세이며 我國의 경우도 뉴질랜드의 主要交易相對國의 하나임
 - 濟洲와 함께 APEC에 있어서 積極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뉴질랜드 政府資料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全體 輸入中 90%이상이 無關稅로 輸入되는 특징을 나타냄 ('88 基準)
 - 各種 貿易協定, GSP 등에 의한 無關稅 輸入 → 總 輸入의 53%
 - 其他 政府의 關稅特惠賦與에 의한 無關稅輸入 → 總 輸入의 40%
- 貿易規模에 비하여 덤핑防止 및 상계조치의 빈도가 높음
→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努力의 一環

〈表 1〉輸出入 構造 推移

(單位：%)

	輸 出		輸 入	
	'79	'87	'79	'87
1 次 產 品	73.5	78.5	20.5	14
食 品	33.5	24	5.5	5.5
燃 料	12	21	10.5	5
原 材 料	13	15.5	3	2.5
原 鑛 · 鑛 產 物	9.5	10	1	0.5
非 鐵 金 屬	5.5	8	0.5	0.5
加 工 製 品	20.0	19.0	77.5	81
化 學 製 品	7	7	10.5	11
鐵 鋼	3.5	1.5	2	2
自 動 車	1	1.5	9.5	7
特 殊 產 業 用 機 械	1.5	1	11.5	11
事 務 器 機 · 通 信 裝 備	0.5	0.5	4.5	8.5
纖 維 · 衣 類	0.5	0.5	8	7
家 庭 用 品	0.5	0.5	4	4.5
其 他 機 械 · 輸 送 裝 備	3	3	14	15
其 他 消 費 財	0.5	1	7.5	8.5
其 他 半 加 工 製 品	2	2.5	6	6.5
其 他	6.5	2.5	2	5
計	100.0	100.0	100.0	100.0
金 額(億 弗)	185	254	164	269

〈表 2〉 主要 交易相對國別 輸出入 比重

(單位 : %)

對象國 / 圈	輸出			輸入		
	'82	'86	'90	'82	'86	'90
美國	10.2	10.6	11.0	21.9	22.0	24.1
日本	25.8	26.9	26.2	20.2	22.4	18.7
E C (12 個 國)	13.5	14.9	13.1	21.4	24.5	22.7
新 蘭 三 國	5.1	4.6	5.0	3.0	3.9	4.4
韓 國	3.2	4.1	5.7	1.4	1.9	2.4
臺 灣	2.2	3.3	NA	2.8	3.7	NA
卡 大	1.6	1.7	1.7	2.3	2.0	2.1
韓 國	1.9	2.3	2.6	2.2	2.1	1.6
中 國	3.3	2.0	4.6	3.0	2.0	2.4
中國	3.8	4.7	2.5	1.3	1.4	2.7
先 進 國	56.8	59.4	59.6	71.7	78.9	76.3
開 途 國	36.5	35.5	36.9	27.7	20.8	23.5
亞 蘇	25.7	25.6	29.8	17.0	15.9	18.2
亞 非	1.1	1.1	0.6	0.7	0.6	0.4
非	1.1	1.4	0.9	0.4	0.5	0.4
中 東	7.8	6.5	4.5	8.6	2.7	3.2
中 南 美	0.9	0.9	1.0	1.0	1.1	1.2
蘇 聯 · 其 他	6.7	5.1	3.5	0.6	0.3	0.2

〈表 3〉 主要 分野別 平均關稅率 및 關稅率範圍

('89基準, %)

品 目	平均關稅率	關稅率範圍
纖維, 衣類	22.2	0~65
家 具	18.9	0~25
玩 具	18.3	0~21
신발, 旅行用品	17.7	0~4.5
남배, 穀物, 乳製品	0	0
石炭, 天然가스	1.8	0~17.5
礦物, 肥料	7.5	0~25
化 學 製 品	7.2	0~17.5
水 產 物	0.1	0~13
輸 送 裝 備	15.6	0~42.5
事 務 器 機	14.8	0~24.0
電 氣 製 品	16.7	0~30.0
非電氣式 機械類	10.7	0~42.5
飲 料, 酒 類	14.4	0~30
花卉類, 植物	1.0	0~27
가죽, 原皮, 毛皮	9.6	0~55

〈表 4〉 UR協商前後 讓許範圍 比較

(單位 : %)

	品目數 基準		輸入額 基準	
	UR前	UR後	UR前	UR後
農 產 物	37	100	55	100
工 產 品	16	100	36	100
全 體	19	100	37	100

〈表 5〉 加工度別 稅率構造

(單位 : %)

區 分	原料(石油除外)	單純 平均		加 重 平 均	
		'80年代初	'80年代末	'80年代初	'80年代末
工產品	半 加 工 品	3.4 9.7 16.4	6.3 6.7 15.3	3.3 8.6 11.5	5.3 6.7 10.9
	加 工 品	2.6 6.6 11.5	4.0 4.9 10.9	2.1 6.7 4.6	4.6 4.2
	基 礎 產 品	4.4 5.4 8.4	1 3 8.8	4.5 0.8 3.5	0.8 -3.1 -1.8
農產物	半 加 工 品	3.7 0.6 6.9	-3.1 6.3 7.3	2.5 0.7 6.6	-1.8 6.6
	加 工 品	0.8 3.5 6.9	0.0 6.3 7.3	0.0 7.0 5.5	0.0 7.0 5.5

〈表 6〉 各國으로부터의 輸入에 適用되는 關稅率 平均

(單位 : %)

	適 用 稅 率 平 均	
	'86~'87	90年代 中盤
뉴질랜드	0.5	0.0
카나다	4.5	2.5
南太平洋 群島國家	0.2	0.0
파푸아 뉴기니	0.0	0.0
其他 開途國	10.0	7.0
其他 國家	8.0	5.5
開 途 國		
全 體	12.6	8.8
纖維·衣類·신발제외	6.6	3.8
先 進 國		
全 體	10.7	7.6
纖維·衣類·신발제외	10.3	7.0

〈表 7〉 덤핑防止 및 相計關稅措置

(單位 : 件數)

區 分	對 象 國	措 置 結 果		措 置 年 度
		關稅賦課	價格約束	
덤 평	日本	1	3	'86(3), '88(1)
	브라질	1	2	'87(1), '89(2)
	中國	2	1	'84(1), '88(2)
	벨지움, 韓國, 미국	0	1	'88(2), '89(1)
	카나다, 체코, 獨逸	1	0	'86(1), '88(5)
	프랑스, 헝가리, 홍콩			'89(4)
	뉴질랜드, 폴란드, 싱가폴, 스위스			
補助金	뉴질랜드	0	1	'87(1)

※ 年度別 ()內의 數值는 當該 年度에 취해진 措置의 件數임

〈表 8〉 緊急輸入制限措置 施行期間別 措置件數

期 間	0~2年	2~4年	4~6年	6~8年	8~10年	10~12年	13年以上
措 置 件 數	8	4	1	2	0	2	1

〈表 9〉 商品構造別 輸出入 比重

(單位 : %)

	輸 出		輸 入	
	'79	'88	'79	'88
食 品	6.2	7.1	45.7	43.4
原 材 料	1.9	1.4	27.9	24.3
燃 料	16.0	5.4	2.1	1.3
電 氣 式 機 械 · 裝 備	2.6	4.1	1.1	1.5
其 他 非 電 氣 式 機 械	9.1	9.0	1.5	2.2
事 務 器 機 · 通 信 裝 備	3.4	11.0	0.3	0.7
化 學 製 品	12.9	12.8	3.6	4.9
自 動 車	9.3	8.6	0.6	0.5
其 他 輸 送 裝 備	3.1	4.3	0.6	0.8
發 電 用 機 械	2.3	1.0	0.1	0.1
纖 維 維	7.5	5.1	1.7	1.8
衣 類	0.3	0.9	0.7	0.5
非 鐵 金 屬	1.9	2.0	3.2	5.7
原 鑄 · 鑄 產 物	3.5	2.8	0.7	0.5
鐵 鋼	6.2	3.2	1.1	1.2
其 他 半 加 工 品	6.3	8.4	7.0	5.9
其 他 消 費 財	6.8	12.0	2.1	2.7
其 他 他	0.7	0.3	0.0	2.0
計	100.0	100.0	100.0	100.0
金 額 (億 弗)	46	73	47	88

〈表 10〉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比重

(單位：%)

對象國 / 圈	輸出			輸入		
	'82	'86	'90	'82	'86	'90
E C (12 個國)	22.4	19.5	15.8	18.9	22.6	19.1
(英國)	(14.0)	(8.5)	(7.1)	(9.4)	(9.4)	(7.3)
日本	12.7	14.6	15.8	18.1	21.1	15.4
歐洲	13.4	15.7	18.3	19.0	16.3	20.2
美國	13.6	16.1	13.2	16.1	17.5	17.8
中國	1.9	3.5	1.0	0.8	0.6	1.2
韓國	1.1	1.5	4.2	1.3	1.3	2.2
臺灣	1.3	1.3	NA	1.1	2.3	NA
加拿大	1.8	1.7	1.6	2.4	2.4	1.9
香港	1.3	1.6	1.5	1.4	1.4	1.2
新加坡	1.8	1.4	1.3	4.5	2.4	1.4
先進國	63.5	67.3	65.4	76.5	83.0	80.2
開途國	27.7	27.6	30.5	23.0	15.9	19.1
亞西亞	17.5	17.1	19.7	16.3	12.2	12.0
非洲	1.0	1.1	1.4	0.6	0.5	0.2
中南美	3.6	2.9	3.0	0.9	0.9	1.2
유럽	1.3	1.8	3.7	0.8	0.3	0.2
中國東	4.3	4.8	2.7	4.4	2.1	5.4
蘇聯·其他	8.8	5.1	4.1	0.5	1.1	0.7

〈表 11〉 關稅收入 吻比重

(單位：百萬NZ\$, %)

年 度	關 稅 收 入	政府財政收入中 比重
1985	795	6.67
1986	742	5.21
1987	688	3.95
1988	847	3.93
1989	507	2.21

〈表 12〉 年度別 關稅引下 推移

(單位 : %)

1987		1990		1992
5.0	→	4.4	→	4.0
10.0	→	8.5	→	7.5
20.0	→	15.0	→	12.5
30.0	→	20.0	→	16.0
35.0	→	22.0	→	17.5
40.0	→	23.5	→	18.5
50.0	→	27.0	→	20.5

※ 但, 產業計劃對象品目은 統計에서除外

〈表 13〉 MFN 稅率構造別 品目比重

(單位 : %)

	'86	'92	'96
0~10%	48	56	96
10~30%	27	35	4
30% 以上	24	9	-

〈表 14〉 平均 關稅率 推移

(單位 : %)

		'84	'87	UR後
農 產 物	單純平均	14.7	14.7	7.8
	加重平均	13.6	12.0	6.0
工 產 品	單純平均	18.9	17.6	13.2
	加重平均	18.6	17.2	13.2

〈表 15〉 UR 協商前後 關稅讓許 比較

(單位 : %)

	品 目 數 基 準		輸 入 額 基 準	
	UR 前	UR 後	UR 前	UR 後
全 體	55	98	63	99
農 產 物	50	89	71	91
工 產 品	56	99	63	99

〈表 16〉 '80年代 뉴질랜드의 相計關稅措置

調査開始	商 品	輸 出 國	措 置
'84. 10	예 인 선	濠 洲	조 사 종 결
'87. 2	밀	濠 洲	제 소 철회
'87. 10	Catamaran 船	濠 洲	상계관세부과
'88. 5	유 채 油	덴마크, 카나다, 네덜란드	조 사 종 결